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 5호의 가목에 따른 방송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라 함은 사업자가 융합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형태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능별 분류”라 함은 자산등의 형태별 계정을 방송국기능, 방송제공기능, 전송기능, 선로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4. “할당”이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를 해당 기능,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배부”라 함은 자산등이 일정한 기능, 사업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관련 기능, 사업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접비(자산)”라 함은 특정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직접 할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공통비(자산)”라 함은 2이상의 기능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8. “융합사업”이라 함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방송제공사업”이라 한다)과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9. “융합설비”라 함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설비」(이하 “방송국설비”라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설비」(이하 “방송제공설비”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

한 규정」 제8조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①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계처리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것
2. 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따를 것

② 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항목에 기능별·사업별 구분을 표시하는 분류부호 체계를 마련하고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분기중에 조직개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 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인건비보다는 수수료 성격이 강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내부거래인 경우 지급수수료는 내부 또는 외부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분리의 원칙) ①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 제시한 배부기준 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회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 (영업보고서의 종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회계」(이하 “방송제공사업회계”라고 한다)의 영업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제7조(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방송제공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
2. 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
3. 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

4.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세부분류방법

5. 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6. 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

2. 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구분, 사업구분

3. 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4. 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

5. 해당자산이 제각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제각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 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융합사업과 융합사업이외의 사업의 분류) 융합사업과 융합사업이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융합사업이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배부기준은 제4장(사업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당해사업자의 당해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융합사업이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제10조(방송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방송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 직접 구성하는 융합설비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 방송제공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방송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송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 제2호 외의 것
2. 방송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 가. 방송제공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 방송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제11조(사용중인 융합설비의 분류) 방송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중인 융합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방송국설비 : 방송제공서비스에만 사용되는 설비로 전기통신설비가 아닌 설비
2. 방송제공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방송제공서비스에만 사용되는 설비
3.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등과 그 부대설비
4.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핸드홀 및 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
5. 단말설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6. 정보처리설비 : 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7. 전원설비 : 방송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등의 설비

제12조(사용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방송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등
2. 건물 :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와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 :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등
4. 선박 : 선박 기타의 수상운반구등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자동차 기타의 육상운반구등
6. 기타 일반지원자산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제13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중에 있는 방송제공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4조(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 자산은 방송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노무비등의 경비로 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등으로서 보유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15조(사용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방송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 가. 콘텐츠 산업재산권
 -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산권
3. 차지권
4. 개발비
 - 가. 콘텐츠 개발비
 - 나. 가목 이외의 개발비
5. 기타 무형자산

제16조(유형자산등의 취득) 사업자는 방송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한다.

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제17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융합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국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 방송제공설비의 내용연수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3.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4.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융합설비외의 유형자산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제18조(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분류) ①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부가서비스이용수익, 채널사용수익, 단말임대수익, 장치비수익, 설비제공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② 요금수익을 가입비수익, 수신료수익, VOD이용수익, 기타 요금수익으로 구분한다.

③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 급여, 잡급, 퇴직급여 등
2. 경비 :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3. 설비사용료 :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회선료등
4.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 상각비
6. 대손상각비
7. 콘텐츠 구입비 및 개발비 : 방송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내부에서 개발한 콘텐츠 비용(단,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은 제외)

8.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9.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 비용

④ 영업외비용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융합 사업서비스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제19조(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 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

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 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 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하 “방송서비스”라고 한다)와 방송서비스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로 배부한다.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제21조(융합설비의 기능별 분류) ① 융합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국기능설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설비 중 방송국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2. 방송제공기능설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공설비 중 방송제공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3. 전송기능설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설비 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 구간과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4. 선로기능설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로설비 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장치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또한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5. 단말기능설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 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6. 정보처리기능설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설비 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7. 전원기능설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8. 융합공통설비 : 융합설비 중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 ②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화되,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융합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제2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설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간별로 세분류한다.

1. 전송기능설비
 - 가. 가입자망 광전송설비
 - 나. 가입자망 광동축혼합망 전송설비
 - 다. 접속망 전송설비
 - 라. 인터넷 백본망 전송설비
 -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전송설비
 - 바. 전송공통설비
2. 선로기능설비

- 가. 가입자망 동선로설비
- 나. 가입자망 광선로설비
- 다. 가입자망 선로설비(광동축혼합망)
- 라. 접속망 선로설비
- 마. 인터넷 백본망 선로설비
- 바. 프리미엄 백본망 선로설비
- 사. 선로공통설비

3. 정보처리기능설비

- 가. 광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 나. 광동축혼합 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 다. 접속망 정보처리설비
- 라. 인터넷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 바. 정보처리공통설비

제23조(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방송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융합설비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융합설비지원기능 자산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제24조(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① 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격, 도착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21조 및 제2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2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5조(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1. 방송국설비운영비용 : 제21조에 따른 방송국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방송제공설비운영비용 : 제21조에 따른 방송제공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전송운영비용 : 제21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4. 선로운영비용 : 제21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단말운영비용 : 제21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6. 정보처리운영비용 : 제21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7. 전원운영비용 : 제21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8. 융합공통설비운영비용 : 제21조에 따른 융합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9.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별 자산을 운영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융합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나. 판매영업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

10. 판매영업기능비용 : 방송제공사업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 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판매촉진비 :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11.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 :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나.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 비용 : 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다. 청구·수납비용 : 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2. 일반관리기능비용 : 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3.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 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

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설비사용료의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 공통 전용회선료는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한다.

③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합설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④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단, 콘텐츠 관련 무형자산 상각비는 기능별로 분류하지 않는다.

⑤ 제18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6조(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①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 중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②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 중 2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27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융합공통설비는 제21조에 따른 융합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융합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제21조에 따른 융합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융합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

우에는 융합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부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28조(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방송제공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형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분류한다.

제4장 사업별 회계분리

제29조(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분류)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별 회계분리하기 이전에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역무별로 회계분리 할 수 있다.

제30조(비용 및 자산의 사업별 회계분리 기준) ① 기능별로 분류된 비

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사업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사업에 할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자산 중 2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31조 내지 제41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31조(융합설비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전송운영 공통비는 각 구간별로 해당 구간을 통하여 제공되는 사업별 대역폭을 기준으로 배부하되, 백본망 구간의 프리미엄망의 경우 지역노드의 가입자수용 포트수에 의하여 배부한다.

② 구간별의 선로운영 공통비는 제1항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③ 단말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또는 단말기능의 사업별 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④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사업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 또는 사업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 전원운영 공통비는 공통운영비용배부 후 제1항 및 제4항의 사업별 운영비용 또는 전원기능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32조(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호를 배부기준으로 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 : 사업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

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취득가액 비율

2. 제1호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

제33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판매영업기능 공통비는 다음 각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별로 배부한다.

1. 광고선전비 :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 사업별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 금액 비율
3.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제34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 : 사업별 가입자수 비율
2.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3. 청구·수납 비용 : 사업별 청구건수 비율

제35조(일반관리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일반관리기능 공통비는 사업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6조(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기업이미지 광고기능 공통비는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7조(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제31조부터 제36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 ② 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

용한다.

③ 무형자산상각비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준은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 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기집계 사업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8조(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출연금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융합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 중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법인세비용은 사업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9조(공통 융합설비의 사업별 배부) 제21조에 따른 융합설비 중 사업별로 할당이 곤란하여 공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융합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전송기능설비 : 제31조제1항의 기준에 따르되, 전송기능설비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2. 선로기능설비 : 제31조 제2항의 기준에 따르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3. 단말기능설비 : 제31조 제3항의 기준에 따르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4. 정보처리기능설비 : 사업별 대역폭 또는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

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5. 전원기능설비 : 공통자산 배부 후 제1호 및 제4호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

제40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배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공통자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융합설비지원기능 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 : 사업별 방송제공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방송제공설비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

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

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 : 사업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 사업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 : 사업별 인원수 비율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제41조 (기타 사업공통자산의 사업별 배부) ① 공통 미착자산은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업별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사업별 분류는 융합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가액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통 건설중인 자산의 사업별 배부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통 무형자산의 사업별 배부는 제40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2조(총괄원가) 방송제공사업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

의 총괄원가는 방송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사업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방송제공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 영업비용의 주요항목 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
2. 감가상각비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

제44조(투자보수) ①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금기저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채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2.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 채고자산 : 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 등 방송제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채고자산
4. 적정운전자본 : 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하여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에서 (1-법인세율)를 곱하여 산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1. 자본비용의 구성
2. 사업자의 경영여건
3. 법인세 부담정도 등

제5장 영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45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당해년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도
2. 각 기관별 배부방법
3. 원가의 흐름도
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방법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융합기능설비의 세분류 방법

7. 사업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

8. 사업자가 사업별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
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이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회계분리지
침서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 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최초 출입시 성명·출입기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7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제출(디스켓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중 방송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연간 방송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④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 사업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지 제1호 서식> 대차대조표-----	30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34
<별지 제3호 서식> 방송 제공사업 영업수익 명세서-----	36
<별지 제4호 서식> 결합판매 요금수익 배부 명세서-----	37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별 영업비용 명세서-----	38
<별지 제6호 서식> 결합판매 직접비 배부 명세서-----	42
<별지 제7호 서식> 역무별 영업외손익 명세서-----	43
<별지 제8호 서식> 기능별 인건비 및 경비 명세서-----	44
<별지 제8-1호 서식> 전송·선로·정보처리기능별 인건비 및 경비 세부명세서--	47
<별지 제9호 서식> 자가소비사업용거래 수익 및 비용명세서-----	50
<별지 제10호 서식> 형태별 영업비용의 사업별 분류 명세서-----	51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자산 및 공동운영비 배부명세서-----	53
<별지 제12호 서식> 형태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55
<별지 제13호 서식> 기능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57
<별지 제14호 서식> 감가상각비등의 사업별 명세서-----	59
<별지 제15호 서식> 유형자산등 사업별 취득가액 명세서-----	63
<별지 제16호 서식> 유형자산등 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67
<별지 제17호 서식> 영업통계 명세서-----	71

(별지 제 1호 서식)

대차대조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회사명 :	제 X(당)기	제 X(전)기	(단위 :원)
자산 I.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A. 융합사업유형자산 가. 사용중인 유형자산 1. 융합설비 1) 방송국설비 <감가상각누계액> 2) 방송제공설비 <감가상각누계액> 3) ... 2. 일반지원자산 1) 토 지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3) ... 3. 미 착 자 산 4. 긴 설 중 인 자 산 나.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 1.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 B. 융합사업이외의사업 자산 1. 융합사업이외의사업 자산			

<p><감가상각누계액></p> <p>(2) 무형자산</p> <p>A. 융합사업무형자산</p> <p>가. 사용중인 무형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권 2. ... <p>나.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무형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무형자산 <p><감가상각누계액></p> <p>B. 융합사업이외의사업 무형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융합사업이외의사업 무형자산 <p><감가상각누계액></p> <p>(3) 투자자산</p> <p>A. 융합사업 투자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보증금 <p>B. 융합사업이외의사업 투자자산</p> <p>(4) 기타비유동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연법인세자산 2. ... <p>II. 유 동 자 산</p> <p>(1) 당좌자산</p> <p>A. 융합사업당좌자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및현금등가물 2. 단기금융상품 3. 유가증권 4. 매출채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상매출금 2) 받을어음 3) 대손충당금 5. 단기대여금 	
--	--

<p>1) 단기대여금 2) 대손충당금 6. ...</p>	<p>B. 용합사업이외의사업 당좌자산</p> <p>1. ...</p> <p>(2) 재고자산</p> <p>A. 용합사업의 상품 등 재고자산</p> <p>1. 상품 등 재고자산</p> <p>1) 상품</p> <p>2) 저장품</p> <p>3) 미착품</p> <p>4) ...</p> <p>2. 폐품 및 불용품</p> <p>B. 용합사업이외의사업의 상품 등 재고자산</p> <p>1. 용합사업이외의사업 자산</p> <p>자산계</p> <p>부채</p> <p>I. 유동부채</p> <p>1. 매입채무</p> <p>2. 단기차입금</p> <p>3. 미지급법인세</p> <p>4. 미지급배당금</p> <p>5. 유동성장기부채</p> <p>6. XX충당금</p> <p>7. ...</p> <p>II. 비유동부채</p> <p>1. 사채</p> <p>2. 장기차입금</p> <p>3. 장기성매입채무</p> <p>4. XX충당금</p>
---	---

<p>5. 이연법인세부채</p> <p>6. ...</p> <p>부 채 계</p> <p>자 본 계</p> <p>I. 자본금</p> <p>1. 보통주자본금</p> <p>2. 우선주자본금</p> <p>II. 자본잉여금</p> <p>1. 주식발행초과금</p> <p>2. 감자차익</p> <p>3. 기타자본잉여금</p> <p>III. 자본조정</p> <p>1. 주식할인발행차금</p> <p>2. 배당전설이자</p> <p>3. 자기주식</p> <p>4. ...</p> <p>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p> <p>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p> <p>2. 해외사업환산손익</p> <p>3.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p> <p>4. ...</p> <p>V.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p> <p>1. 법정적립금</p> <p>2. 임의적립금</p> <p>3.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p> <p>(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p> <p>자 본 계</p> <p>부 채 및 자 본 총 계</p>		
---	--	--

☐ 작성지침

1.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주식으로 공시한다.

(별지 제 2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회사명 :	제 X(당)기	제 X(전)기	(단위 :원)
I. 영업손익 가. 영업수익 A. 융합사업 영업수익 B. 융합사업이외의사업 영업수익 나. 영업비용 A. 융합사업 영업비용 1. 인건비 2. 경비 3. 설비사용료 4. 유형자산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상각비 6. 대손상각비 7. 콘텐츠 구입비 및 개발비 8. 경영상태비 및 연구비 9. 자가소비사업비용			

<p>B. 융합사업 이외의 사업 영업비용</p> <p>II. 영업외손익</p> <p>가. 영업외수익</p> <p>나. 영업외비용</p> <p>III. 특별손익 및 법인세비용</p> <p>가. 특별이익</p> <p>나. 특별손실</p> <p>다. 법인세 비용</p> <p>IV. 당기순이익</p>		
--	--	--

■작성지침 :

1. 융합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영업외 수익, 영업외비용, 특별이익, 특별손실은 구분 기재할 수 있으며, 각 계정과목중 회계분리상 중요한 과목은 세부 내역을 별도 표시하거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 3호 서식)

방송 제공사업 영업수익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방송 제공사업
1. 요금수익 (1) 가입비수익 (2) 수신료수익 (3) VOD 이용수익 (4) 기타 요금수익 소계 2. 부가서비스이용수익 3. 채널사용수익 4. 단말임대수익 5. 장치비수익 6. 설비제공수익 7. 자가소비스사업용수익 8. 기타 영업수익 영업수익 합계	

(별지 제 4호 서식)

결합판매 요금수의 배부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방송 제공 사업	전기통신사업										합계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 신역무
		()서비스	... ()서비스	소계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1) 가입비수익 (2) 기본료수익 혹은 수신료수익 (3) 정액요금수익 (4) 통화료수익 혹은 VOD 이용수익 (5) 장치비 (6) 부가서비스수익 (7) 기타 요금수익 합 계													

(별지 제 5호 서식)

사업별 영업비용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분	배부 방법	방송 제공 사업	진기통신사업										부가 통신 역무	합계		
			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용 합 설 비 운 영 비 용	(1) 방송국설비운영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2) 방송제공설비운영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3) 진송운영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4) 선로운영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가. 가입자선로 운영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나. 중계선로 운영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5) 단말운영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6) 정보처리운영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별지 제 6호 서식)

결합판매 직접비 배부 명세서

(단위 :원)

회사명 :	구 분	방송 제공 사업	전기통신사업										합계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시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1) 광고선전비																
	(2) 판매촉진비																
	...																
	...																
	...																
	...																
	...																
	합 계																

(별지 제 7호 서식)

역무별 영업외손익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배부 방법	방송 제공 사업	전기통신사업												합계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소계			
1. 영업외수익	직접비 공통비 계															
(1) 유형자산 처분이익																
소 계																
2. 영업외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1) 출연금																
(2) 유형자산 처분손실	직접비 공통비 계															
(3) 법인세비용	직접비 공통비 계															
소 계																
3.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 합계																

▣ 작성지침

1. 역무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 8호 서식)

기능별 인건비 및 경비 명세서

회사명 :

(단위 : 원)

계정과목	배부 방법	방송국 설비 운영 비용	방송 제공 설비 운영 비용	전송 운영 비용	선로운 영 비용	단말 운영 비용	정보 처리 운영 비용	진원 운영 비용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판매영업 기능비용			고객서비스 기능비용			일반관리 기능비용	기업 이미지 광고기능 비용	합계			
									유형설비지원 자산	관제지원지 원자산	고객서비스지 원자산	일반관리지원 자산	가합차지광고 지원자산	판매촉진비	단말장치 구입지원비용	기업지원 라비용	미일리지 행사지원 비용	창구수납 비용						
1. 인건비																								
(1) 급여	직접비 공통비 계																							
(2) 잠급	직접비 공통비 계																							
(3) 퇴직 급여	직접비 공통비 계																							
인건비 합계																								
2. 경비																								
(1) 복리 후생비	직접비 공통비 계																							
(2) 여비 교통비	직접비 공통비 계																							
(3) 통신비	직접비 공통비 계																							
(4) 전력수 도료등	직접비 공통비 계																							

(별지 제 8-1호 서식)

전송·선로·정보처리기능별 인건비 및 경비 세부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계정과목	배부 방법	전송기능설비운영비용				선로기능설비운영비용				정보처리기능설비운영비용				합계		
		가입자망 광전송 설비	가입자망 광동축 혼합망 전송설비	접속망 전송설비	인터넷 백본망 전송설비	프리미엄 백본망 전송설비	가입자망 동선로설 비	가입자망 광선로설 비	가입자망 선로설비 (광동축 혼합망)	접속망 선로설비	인터넷 백본망 선로설비	프리미엄 백본망 선로설비	광동축 혼합망 가입자망 정보처리 설비		접속망 정보처리 설비	인터넷 백본망 정보처리 설비
1. 인건비																
(1) 급여	직접비 공통비 계															
(2) 잠금	직접비 공통비 계															
(3) 퇴직 급여	직접비 공통비 계															
인건비 합계																
2. 경비																
(1) 복리 후생비	직접비 공통비 계															
(2) 여비 교통비	직접비 공통비 계															
(3) 통신비	직접비															

(별지 제 9호 서식)

자가소비사업용거래 수익 및 비용 명세서

회사명 : 자가소비사업용거래 제공서비스 거래 이용서비스 1. 방송제공사업 2. 전송역무 (1) ()서비스 (2) ()서비스 소 계 3.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1) ()서비스 (2) ()서비스 소 계 4.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1) ()서비스 (2) ()서비스 소 계 5. 부가통신역무 자가소비사업용수익 합계	전기통신사업						자가소비 사업용비용 합계			
	방송 제공 사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서비스	...	()서비스	소 계	()서비스	...		()서비스	소 계	

(단위 :원)

(별지 제 10호 서식)

형태별 영업비용의 사업별 분류 명세서

회사명 :	전기통신사업												합계			
	계정과목	배부방법	방송제공사업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1. 인건비																
(1) 급여	직접비															
(2) ...	공통비															
소계	직접비															
공통비	공통비															
2. 경비																
(1) 복리후생비	직접비															
(2) ...	공통비															
소계	직접비															
공통비	공통비															
3. 설비사용료																
(1) 진용회선료	직접비															
(2) 신로설비사용료	공통비															
(3) 기타설비사용료	직접비															
	공통비															

(단위 :원)

	<p>마. 프리미엄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7) 전원설비 소계</p>		
일반지원 자산	<p>(1) 융합설비지원기능 (2) 판매영업기능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4) 일반관리지원기능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소계</p>		
무형자산	<p>(1) 융합설비지원기능 (2) 판매영업기능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4) 일반관리지원기능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소계</p>		

▣ 작성지침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협회계분리기준 제27조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2. 기능별 배부기준 및 배부적수는 주석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 12호 서식)

형태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구분	설비명	취득가액				당기상각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초	기말
	(1)방송국설비 (2)방송제공설비 (3)진송설비 가. 가입자망 광진송설비 나. 가입자망 광동축혼합망 진송설비 다. 접속망 진송설비 라. 인터넷 백본망 진송설비 마. 프리미엄 백본망 진송설비 (4)선로설비 가. 가입자망 동선로설비 나. 가입자망 광선로설비 다. 가입자망 신로설비(광동축혼합망) 라. 접속망 선로설비 마. 인터넷 백본망 선로설비 바. 프리미엄 백본망 선로설비 (5)단말설비 (6)정보처리설비 가. 광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나. 광동축혼합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회사명 : (단위 :원)

(별지 제 13호 서식)

기능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회사명 :

구분	설비명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초	기말
융합설비	방송국기능설비							
	방송제공기능설비							
	전송기능설비							
	가. 가입자망 광전송설비							
	나. 가입자망 광동축혼합망 전송설비							
	다. 접속망 전송설비							
	라. 인터넷 백본망 전송설비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전송설비							
	선로기능설비							
	가. 가입자망 동선로설비							
	나. 가입자망 광선로설비							
	다. 가입자망 선로설비(광동축혼합망)							
	라. 접속망 선로설비							
	마. 인터넷 백본망 선로설비							
	바. 프리미엄 백본망 선로설비							
단말기능설비								
정보처리기능설비								
가. 광고입자망 정보처리설비								
나. 광동축혼합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다. 접속망 정보처리설비								
라. 인터넷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전원기능설비								
소계								- 57 -

(별지 제 14호 서식)

감가상각비등의 사업별 명세서

구분	실비명	배부 방법	방송 제공 사업	전기통신사업										합계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 통신 역무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융합 설비	(1) 방송국기능설비	직접비 공통비 계																
	(2) 방송제공기능설비	직접비 공통비 계																
	(3) 전송기능설비	직접비 공통비 계																
	가. 가입자망 광전송설비	직접비 공통비 계																
	나. 가입자망 광동축혼합망 전송설비	직접비 공통비 계																
	다. 접속망 전송설비	직접비 공통비 계																
	라. 인터넷 백본망 전송설비	직접비 공통비 계																

회사명 : (단위 :원)

(별지 제 15호 서식)

유형자산등 사업별 취득가액 명세서

구분	설비 명	배부방법	방송 제공 사업	전기통신사업										합 계		
				전송업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업무				전기통신회신실비임대업무					부가 통신 업무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융합 설비	(1) 방송국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2) 방송제공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3) 전송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가. 가입자망 광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나. 가입자망 광동축혼합망 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다. 접속망 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라. 인터넷 백본망 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회사명 : (단위 :원)

(별지 제 16호 서식)

유형자산등 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구분	설비명	배부방법	방송 제공 사업	진기통신사업										부가 통신 역무	합계		
				진송역무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단위 :원)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서비스	...	소계	()서비스	...	()서비스	소계				
융합 설비	(1) 방송국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2) 방송제공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3) 진송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가. 가입자망 광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나. 가입자망 광동축혼합망 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다. 접속망 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라. 인터넷 백본망 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전송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4) 선로기능설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직접자산
공통자산
계

- 가. 가입자망 동선로설비
 - 나. 가입자망 광선로설비
 - 다. 가입자망 신로설비
(광동축혼합망)
 - 라. 접속망 신로설비
 - 마. 인터넷 백본망 신로설비
 - 바. 프리미엄 백본망 신로설비
- (5) 단말기능설비
- (6) 정보처리기능설비
- 가. 광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 나. 광동축혼합 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 다. 접속망 정보처리설비
 - 라. 인터넷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별지 제 17호 서식)

영업통계 명세서

회사명 :

(단위 :원)

구 분	방송 제공사업
<p>I. 영업수익</p> <p>II. 총괄원가</p> <p>(1) 영업비용</p> <p>(2) 영업외손익</p> <p>(3) 투자보수</p> <p>(가) 요금기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유형자산 - 연평균 무형자산 - 연평균 임차보증금 - 연평균 채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p>(나) 투자보수율</p> <p>III. 가입자수</p> <p>(1) 1/4분기</p> <p>(2)</p> <p>IV. 고용인원수</p> <p>(1) 1/4분기</p> <p>(2)</p>	

작성지침

1. 가입자수는 분기말 누적가입자 수를 의미한다.